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1
------------	------

발의연월일 : 2017. 3. 10.

발의자 : 김도읍 · 이만희 · 이현승  
정태옥 · 지상욱 · 이명수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이채익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 처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임.

이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4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u>부득이한 사정이 있는</u>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4조(처리기간) ① ----- ----- -----. -- <u>정당한 사유가 있는</u> ----- -----.</p> <p>② (현행과 같음)</p>